#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466

발의연월일: 2021. 7. 12.

발 의 자:김경만·김남국·김병주

김정호 · 양정숙 · 이규민

이용빈 · 이용선 · 진성준

홍정민 · 황운하 의원

(11일)

#### 제안이유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인센티브를 부여 하는 등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시행 중에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발굴·육성', '금융 및 세제지원' 등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근거조항은 두고 있으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는 미흡한 실정임.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경제 시대가 도래하고,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공급망(GVC)이 재편되는 등 기업경영을 둘러싼 환경이 급격하 게 변화하고 있는 바, 경영혁신을 통해 기업 스스로 변화에 빠르게 대 응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 강화가 절실한 상황임.

이에 현행법상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규정을

경영혁신 활동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뿐만 아니라 경영혁신 촉진 또한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현행법 제15조의3에 있는 '경영혁신'의 개념과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개념을 정의 조항으로 이동함(안 제2조).
- 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발굴·육성, 중소기업 의 경영혁신 관련 금융지원, 중소기업 경영혁신 관련 홍보 등 중소기업 경영혁신 촉진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3제1항).
- 다. 제8조의2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 지원 조항을 경영혁신 중소기업에 준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3제3항).

#### 법률 제 호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8108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4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경영혁신"이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업무수행 방식, 조직구조 및 영업활동 등에서 새로운 경영기법을 개발하거나 경영 기법의 중요한 부분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 4의2.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란 경영혁신 활동을 통하여 경쟁력의 확보가 가능하거나 미래 성장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제15 조의3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기업을 말한다.

제15조의3의 제목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사업 등)"을 "(중소기업의 경영혁신 촉진 지원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9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를 "제8조의2 및 제1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로한다.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경영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이하 "경영혁신 촉진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 1.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발굴 육성
- 2. 중소기업 경영혁신 관련 금융지원
- 3. 중소기업 경영혁신 관련 홍보
- 4. 그 밖에 경영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경영혁신 촉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8108호 중소기업	법률 제18108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의5. (생 략)	1. ~ 3의5. (현행과 같음)
<u> &lt;신 설&gt;</u>	4. "경영혁신"이란 기업의 경쟁
	력을 높이기 위하여 업무수
	행 방식, 조직구조 및 영업활
	동 등에서 새로운 경영기법
	을 개발하거나 경영기법의
	중요한 부분을 개선하는 것
	<u>을 말한다.</u>
<u> &lt;신 설&gt;</u>	4의2.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
	란 경영혁신 활동을 통하여
	경쟁력의 확보가 가능하거나
	미래 성장가능성이 있는 중
	소기업으로서 제15조의3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기업을 말한다.
<u>4.</u> (생 략)	<u>5.</u> (현행 제4호와 같음)
제15조의3(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제15조의3(중소기업의 경영혁신
육성사업 등) ① 중소벤처기업	<u>촉진 지원사업)</u> ① 중소벤처기
부장관은 경영혁신활동을 통하	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경영혁

나 미래 성장가능성이 있는 중 기업"이라 한다)을 발굴ㆍ육성 부진할 수 있다.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니 진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서 "경영혁신"이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 여 업무수행 방식, 조직구조 및 영업활동 등에서 새로운 경영 기법을 개발하거나 경영기법의 중요한 부분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 ③ 제1항의 사업에 관하여는 ③ -----제9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부 제8조의2 및 제15조제2항부터 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 다.

- 여 경쟁력의 확보가 가능하거 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이하 "경영혁신 소기업(이하 "경영혁신형 중소 촉진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 1.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발굴・ 육성
    - 2. 중소기업 경영혁신 관련 금 융지원
    - 3. 중소기업 경영혁신 관련 홍 보
    - 4. 그 밖에 경영혁신을 촉진하 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경영 혁신 촉진 지원사업을 추진하 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 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5항까지의-----.